

의안번호	제 386 호
의 결 연 월 일	2012년 9월 일 (제314회)

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유완백 의원 외 6명
발의연월일	2012년 8월 31일

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유완백 의원 대표발의)

발의연월일 : 2012년 8월 31일

발 의 자 : 유완백 · 정 현 · 황규철 · 권기수 ·
김도경 · 윤성옥 · 이수완 의원(7명)

의안 번호	386
----------	-----

1. 제안 이유

- 도내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 미흡한 조문을 개정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가. 도내 공공기관에 관한 용어정의의 명확화(안 제2조)
- 나. 여성기업 지원 제한 조문 명확화(안 제4조)
- 다. 5년마다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조문 신설(안 제5조의1)

3. 조례안 : 불 임

4. 관계법령 발췌 : 불 임

5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6. 관련부서 협의 : 경제통상국 기업유치지원과와 협의

7. 입법예고사항 : 본 조례안은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.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“공공기관”이란 충청북도 및 소속 행정기관, 충청북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, 충청북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.

제4조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여성기업중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제한 기준과 방법 등은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따로 정한다.

제5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1(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) ① 도지사는 여성의 창업활동과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여성기업 육성 및 촉진을 위한 방향과 목표
2.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·인력·정보·기술 지원 등에 관한 사항
3. 여성기업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
4. 국내·외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
5. 여성기업 홍보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여성기업 육성과 여성경제인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) 도지사는 제5조의1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투자기관”을 “공공기관”으로 한다.

제9조1항제5호 중 “투자기관”을 “공공기관”으로 하고, 제11조제3항 중 “투자기관”을 “공공기관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생 략)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투자기관”이란 「지방공기 업법」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 업으로서 충청북도가 자본금 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을 말한다.</p> <p>제4조(지원의 제한) ① 여성기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같은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에 서 제외한다.</p>	<p>제1조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“공공기관”이란 충청북도 및 소속 행정기관, 충청북도 가 설립한 지방공기업, 충청 북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.</p> <p>제4조(지원의 제한) ① 여성기업 중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 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사 업자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 위를 벗어나는 기업에 대해 서는 이 조례의 지원대상에 서 제외한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② 제1항에 의한 지원 제한 기준과 방법 등은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따로 정한다.</p> <p><신 설></p>	<p>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제한 기준과 방법 등은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따로 정한다.</p> <p>제5조의1(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) ① 도지사는 여성의 창업활동과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여성기업 육성 및 촉진을 위한 방향과 목표 2.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·인력·정보·기술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. 여성기업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4. 국내·외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

현 행	개 정 안
	<p>5. <u>여성기업 홍보에 관한 사항</u></p> <p>6. <u>그 밖에 여성기업 육성과 여성경제인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/u></p>
<p>제6조(계획의 수립 및 시행) <u>도지사는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연도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) <u>도지사는 제5조의1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9조(지원사항) ① <u>도지사 및 투자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을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<u>그 밖에 도 및 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기업과 관련된 시책 추진에 있어서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는 각종 시책</u></p>	<p>제9조(지원사항) ① -----</p> <p><u>공공기관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<u>공공기관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<p>제11조(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·지도) ① ~ ② (생략)</p>	<p>제11조(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·지도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③ 도지사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·군 및 투자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할 수 있다.</p>	<p>③ ----- ----- ---- <u>공공기관</u> ----- -----.</p>

관 계 법 령

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
제4조(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)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(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)는 제2조(定義)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.

<개정 2007.8.3>

1.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
2.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. 다만,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. [전문개정 1999.2.5]

□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

제5조(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) ①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여성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
2.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
3.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, 정보, 기술, 인력,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
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중소기업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여성기업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여성기업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 [전문개정 2009.12.30]

□ 중소기업기본법

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(이하 "중소기업시책"이라 한다)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(이하 "중소기업"이라 한다)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. <개정 2011.7.25>

1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

가.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, 자본금,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

나.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

2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

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(小企業)과 중기업(中企業)으로 구분한다.

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. 다만,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·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.